

등록번호	교육지원과-1462
등록일자	2015.2.12.
결재일자	2015.2.12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도서관정책팀장	교육지원과장	주민자치국장
이현정	김인호	김판덕	02/12 이경현
협 조			

작은도서관 육성지원을 위한

## 2015년 공·사립작은도서관 평가 계획



서 대 문 구  
교육 지원과

## 2015년 공·사립작은도서관 평가 계획

공·사립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2015년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보조금 대상을 선정하고,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방안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.

### I 추진 근거

-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
- 2015년 공·사립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을 위한 평가 및 지원 계획  
【서울시 도서관정책과-1324(2015. 2. 9)】

### II 추진 방향

- 민·관 합동평가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 확보
-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실태조사와 서울시 작은도서관 평가 대상 및 항목이 유사하므로 실태조사와 평가를 동시에 진행

### III 실태조사 및 평가 개요

- 대 상 : 공·사립 작은도서관 (24개관)
- 기 간 : 2015. 2. 13 ~ 3. 6
- 방 법
  - 1차 평가 : 작은도서관 운영자 평가
    - 실태조사 : 작은도서관 운영자 실태조사 시스템 직접 입력
    - 운영평가 : 평가점검표에 따라 1차 운영자 직접 평가

- 2차 실사 : 민·관 평가단 현장 실사
  - 실태조사 입력 사항 및 평가 증빙서류 등 확인
- 내 용 :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전반

## IV 세부 계획

- 실태조사 및 평가 대상 : 공·사립 작은도서관 23개관

구분	도서관수	비고
공립작은도서관	10개	남가좌1동, 북가좌2동작은도서관 제외 (법정 면적기준 미달)
사립작은도서관	13개	가재울아이파크도서관 제외(휴관)

- 방 법

- 1차 운영자 평가
  - 운영자 실태조사 시스템 내용 입력 : 2015. 2. 17
  - 평가점검표에 의거 운영자 평가 : 2015. 2. 17
- 2차 민·관 합동 평가단 현장실사 : 2015. 2. 26 ~ 3. 3
  - 평가단 구성 : 담당직원, 공·사립작은도서관 관계자, 공공도서관 관계자

- 실태조사 및 평가 항목

구분	평가항목
실태조사	법적기준 충족여부, 작은도서관 운영 및 이용 현황 전반
운영평가	운영목적의 적합성 및 재정여건, 도서관 서비스, 장서관리, 시설 인력현황, 홍보교류 협력 등

■ 현장실사 일정

일 시	대상 도서관
2015. 02. 26	어린이도서관꿈꾸는세상, 하늘샘어린이도서관, 명지어린이영어도서관 DMC래미안e편한세상 작은도서관 3개관
2015. 02. 27	원천어린이도서관, 새솔돋서실, 돈의문센트레빌작은도서관 천연뜨란채문고, 아낌없이주는나무
2015. 03. 03	공립작은도서관 10개관

**V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**

- 지원대상 : 공·사립 작은도서관 10개관  
※사립작은도서관 60%이상 지원
- 선정방법 : 평가 결과를 근거로 운영 실적이 좋은 도서관 선정
  - 현장평가결과, 순위표를 근거하여 우리구 배정 개소수(10개)에 맞게 선정
  - 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작은도서관은 선정에서 제외
- 지원내용 : 10개관 20,000천원(자료구입비, 운영비)
  - 1관 당 150만원~250만원 차등지원

등 급	지원금액(천원)	등급별 지원관수 비율
A	2,500	20~40%
B	2,000	40~60%
C	1,500	20~40%

☞ 지원등급은 평가 후 점수 분포에 따라 최종 결정

## <지원 제외 기준 >

### ■ 작은도서관의 법적 기준 미달인 경우

※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(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)  
[별표1] 작은도서관 시설 기준

시 설		도서관자료
건물면적	열람석	
33제곱미터 이상	6석 이상	1,000권 이상

- 특정 종교서적이 전체 서적의 30% 이상인 경우
- 주 5일 미만 개방하는 도서관 (주5일 이상 개방해야 함)
- 1일 4시간 미만 운영하는 작은도서관(개방일에는 1일 4시간 이상 개방해야 함)
- 간판(안내판)이 없거나 외부에서 인식이 불가능한 작은도서관
- 운영주체가 기업인 작은도서관
- 영리를 목적으로 유료회원제 등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경우
- 자치구에서 부실운영이라고 판단한 경우

## VI 행정 사항

### ■ 공·사립 작은도서관

- 작은도서관 평가 시 적극협조
-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시스템 입력 및 점검표 사전 작성 협조
- 평가항목 증빙자료 준비

### ■ 교육지원과

- 각 도서관별 평가계획 및 평가내용 송부
- 평가 결과 서울시 제출 (2015. 3. 13까지)

- 붙임 : 1. 평가대상 공·사립 작은도서관 1부.  
2. 실태조사지 및 평가점검표 각 1부.  
3. 평가내역 및 평가결과 양식 각 1부. 끝.